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53

발의연월일: 2024. 11. 29.

발 의 자:윤한홍·박형수·서일준

엄태영 · 김민전 · 주진우

김상훈・최수진・송석준

김종양 · 김재섭 · 권영진

이종욱 · 강명구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 다양한 조세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한편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되고 전·후방산업의 경제 파급효과가 큰 전략산업이고, 전 세계적으로 방산 수출 경쟁이 치열해지고있는 상황임. 따라서 국내 방산기업의 기술력 강화와 투자 확대를 위해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국가전략기술 전반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올해 말로 설정되어있는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의 연 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3 년 연장하고, 사업화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바이오의약품"을 "바이오의약품, 방위산업"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중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을 "투자하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위산업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 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방위산업 연구·인력개발비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3조(방위산업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 4조제1항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 중 방위산업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 자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아 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제10조(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의 연구개 세액공제) ① -----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 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4년 12월 -----2027년 12월 <u>31일</u>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 31일-----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 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 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반도 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 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및 그 밖에 대 의약품, 방위산업-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

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계산한 금액

가.·나. (생 략)

3. (생략)

② ~ ⑥ (생 략)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가.ㆍ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 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 1. (생략)
- 2. 공제금액
 -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 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 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1) (생략)
 -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 이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

<u>.</u>
1. (현행과 같음)
2
가
· 1•
1) (현행과 같음)
2)
2)
ㅌㅋㅂㄴ
<u>투자하는</u>

<u>까지 투자하는</u> 경우: 100 분의 15(중소기업은 100 분의 25)에 상당하는 금 액 나. (생 략) 3. (생 략)

0. (0)

② ~ 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